



보건복지부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요양병원 9인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(고시 제2019-182호, '22.1.1.
적용) 관련 안내

1. 관련근거

가.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·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및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·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(고시 제2019-182호, '19.8.22.)

나. 보험급여과-6033호('21.12.2.)

2. 상기 고시와 관련하여 요양병원 환자군 중 의료고도 이상이거나 특정기간 환자 중 폐렴, 패혈증 등으로 담당의사의 판단 하에 집중 간호?관찰이 필요하여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[붙임] 기관의 9인 이상 병실에 입원한 경우, 2022년 6월 30일까지 9인 이상 입원료 감산을 유예함

- 아 래 -

가. 기관기준

-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 인증 결과 '인증' 또는 '조건부 인증' 획득 기관
-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은 각 해당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상의 1등급에 해당하는 기관

나. 병실기준

- 입원실의 면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[별표 4]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서 정한 면적을 유지하여야 함
-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.
 - 해당 병실 운영을 위한 무정전시스템을 갖추어야 함
 -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을 갖추어야 함
 - 3병상 당 1대의 산소포화도, 맥박수, 호흡수를 감시할 수 있는 환자감시장치를 비치하여야 함
 -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하여야 함
 - 병상마다 비상연락장치를 비치하여야 함

3. [붙임]에 해당하는 기관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상기 1. 2.의 기준을 유지하여야 하며, 감염예방관리와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

붙임.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유예 대상기관 1부. 끝.

보 건 복 지 부 장



수신자 대한요양병원협회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

주무관

김원희

행정사무관

윤민수

보험급여과장

이중규

건강보험정책국장

전결 12/24

최종균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6531 2021. 12. 24. 접수 2021. 12. 27.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4층 보험금 / bliss0710@korea.kr
여과

전화 044-202-2736 전송 044-202-3934 / bliss0710@korea.kr / 비공개(5)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